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9. 3(화) 10:00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95호
- 나. 제 출 자 :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 확대(안 제5조제5호, 제6호).
- 나. 저장강박 의심가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신설(안 제6조제4호, 제5호).
- 다.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, 가구 특성·생활실태 조사 실시 신설(안제6조의2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2024. 8. 30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및 실태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

나. 주요 내용

1) 지원대상 확대(안 제5조제5호, 제6호).

- 「기초연금법」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

2) 저장강박 의심가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신설(안 제6조제4호, 제5호).

3)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, 가구 특성·생활실태 조사 실시 신설(안제6조의2).

다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실태 조사 등을 신설하여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□ 사회보장기본법

[시행 2021. 12. 9.] [법률 제18215호, 2021. 6. 8., 일부개정]

제23조(사회서비스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, 사회참여,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